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3서식] <개정 2022. 2. 18.>

소득·재산 신고서

※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시를 하며,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성명[1]						
소득사항	보훈급여금 등 (간호·조정수당 제외)		담당 공무원 기재			
	재산소득	임대소득	원	원	원	원
		이자소득	자산 조회결과 적용			
		연금소득	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			
	근로소득	상시근로	원	원	원	원
		일용근로	원	원	원	원
	사업소득	농업소득 (주재배작물명)	원 ( )	원 ( )	원 ( )	원 ( )
		임업소득	원	원	원	원
		어업소득	원	원	원	원
		기타(자영업)	원	원	원	원
	기타소득	사적이전소득 (무료임대)	원	원	원	원
		공적이전소득[2]	자산 조회결과 적용			
		기타 (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)	원	원	원	원
재산사항	건축물 (주택, 건물, 시설물)		자산 조회결과 적용		토지	자산 조회결과 적용
	선 박		자산 조회결과 적용		임목재산	자산 조회결과 적용
	항공기		자산 조회결과 적용		어업권	자산 조회결과 적용
	자동차		차량명( ), 용도 [ ] 생업용 [ ] 보철용 [ ] 자가용			
	임차보증금		전·월세보증금(백만원), 상가보증금(백만원), 기타(백만원)			
	금융재산		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			
	동 산		소(마리, 원),돼지(마리, 원)		분양권	원
			기타가축(마리, 원),종묘(원)		조합원입주권	원
			기계·기구류(원),기타(원)		회원권	자산 조회결과 적용
부채	금융기관 대출금		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		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	원
	임대보증금		원			
	공증사채		판결문, 화해,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(원)			
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1항·제8조의4제1항·제12조의3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제1항·제10조의4제1항·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·제8조의2제1항·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 귀하

1) 별지 제6호의2서식, 별지 제6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작성한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적되, 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.

2) "공적이전소득"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.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)